JIPYONG NEWSLETTER 법무법인 지평 | 증권금융 뉴스레터



■ 정책 동향 ■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 시행

심희정 변호사 | 유정한 변호사

금융위원회는 2015년 11월 27일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소규모 펀드, 즉 설립 후 1년이 경과한 공모(추가형) 펀드 중 원본이 50억 원미만인 펀드가 다수 양산됨에 따라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의 경우 ①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려워 분산투자가 곤란하고, ② 펀드 수익률관리가 소홀할 뿐만 아니라 펀드 규모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으로 인하여 펀드 규모가 작을수록 비용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며, ③ 투자전략이 유사한 소규모펀드 난립으로 투자자의 합리적상품선택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펀드 정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각 운용사 별로 수립한 소규모펀드 정리계획(임의해지, 펀드 합병, 모자형 전환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정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소규모펀드 중 부실자산펀드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리계획 재수립 및 이행을 촉구하여, 해당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간접적인 페널티(모자형 펀드 또는 클래스 펀드 이외의 신규 펀드 등록을 목표 비율 또는 개수를 충족할 때까지 제한 등)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소규모 펀드 정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비조치의견서

1

JIPYONG NEWSLETTER 법무법인 지평 | 증권금융 뉴스레터



2016년 2월 제2호

등을 통해 모자형 펀드의 공시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 부담 완화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펀드 등록심사도 강화하여 기존 펀드와 유사한 펀드는 모자형이나 종류형 펀드를 활용하여 기존 펀드와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유도하고, 소규모 펀드 정리실적이 미흡한 운용사는 신규펀드 등록시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2. 다운로드: 「펀드투자자 신뢰회복을 위한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 보도자료